

퇴직연금제 시행 준비상황·계획 설명자료

2005. 11

노 동 부

- 목 차 -

I. 기본방침	1
II. 세무 준비사항(계획)	1
1. 홍보 및 교육 실시	1
2. 고시 등 하위규정 제정	6
3. 업무편람/지침 작성·배포 및 교육	7
III. 기 타	8
1. 금감위 감독규정 협의	8
2.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마련 관련	9
3. 세제개편 협의	10

I. 기본방침

- ◆ 금년 12.1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법·제도화 작업은 일단락
 - ※ 시행령(8.19)·시행규칙(9.22) 공포 완료
- ◆ 그러나 퇴직연금제의 실시여부, 퇴직연금제의 형태, 구체적인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등이 노사자율에 맡겨져 있고,
 - 제도 자체가 노·사 및 근로감독관 모두에게 생소하며,
 - 개별 사업장 노사가 法定 범위 안에서 연금제도를 설계하여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 또한, 초기에 노사나 금융기관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 퇴직연금제로의 전환률이 낮거나, 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이익창출에 맞추어질 우려
- ◆ 따라서 하위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정리하고, 노·사·정·금융기관에 대한 밀도 있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 퇴직연금제가 근로자의 2층 노후소득 보장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

II. 세부추진 상황(계획)

1. 홍보 및 교육 실시

□ 지역별 공동순회 설명회

○ 목 적

- 퇴직연금제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간의 퇴직연금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 개별 사업장 실정에 맞는 퇴직연금제의 형태를 선택하고,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관(공동) : 노동부·금융감독위원회(감독원)·경총·전경련. 상공회의소·퇴직연금사업자 단체(5개 협회)

○ 참석대상 : 사업장 노무관리 책임자(실무자), 근로자대표(노조대표 등)

○ 설명내용

-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설명 : 노동부
- 금융기관관리 및 적립금 운용방법 안내 : 금감위
- 퇴직연금사업자별 주요 특징 안내 : 퇴직연금사업자

○ 일시 및 개최지 : 9개 도시

지 역	날 짜	개 최 장 소
서 울	11. 9 14:00~16:3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실 (02-2124-3702) (여의도역 3번 출구)
인 천	11.10	인천상공회의소(남동본소) (032-810-2800) (인천지하철 원인재역 1번출구)
춘 천	11.11	새마을금고연합회 강원도지부 (033-251-6661)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옆)
대 구	11.16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053-601-5000)
창 원	11.17	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회관 3층 대회의실 (055-275-5101) (창원시청 로터리부근, 이마트 옆)
부 산	11.18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대강당 (051-500-5222) (부산지하철 1호선 교대앞)
대 전	11.23	사학연금회관(중부둔산회관) 컨벤션홀 (042-471-5211)
광 주	11.24	김대중컨벤션센터 (062-611-2000) (광주지하철 상무역 3번출구)
제 주	11.25	제주그랜드호텔 크리스탈룸(2층) (064-747-5000)

○ 기타 : 설명회이후 연재 기사 요청

- 공동순회교육 현장 취재 → 문답식 풀이 게재 → 모범 실시 사업장 취재(케이스별)

□ 설명(홍보)책자 제작·배포

○ 목 적

- 퇴직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배포대상 : 300인 이하~40인 사업장

○ 내 용

- 퇴직연금제에 관한 기초부터 실제 설계·운영까지를 포함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
- ※ “퇴직연금제에 대한 개요” 정도는 작년에 팜플렛이 배포되었으며, 금융기관·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가 된 상태이므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자료가 필요함

○ 시 기 : 11월 첫째 주

□ 공공부문 대상 설명회

- 목 적 : 퇴직연금제 실시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
- 대 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단·공사 등(600개소)
- 일 시 : 10.7 ~10.14(기 완료)
- 개최지 및 참석인원 : 580명
 - 본부(240명), 대전(100명), 광주(130명), 부산(110명)

□ 우리부 산하기관 대상 설명회

○ 목 적

- 우리부 산하 공공부문부터 퇴직연금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 대 상

- 근로복지공단 등 10개소 노무관리 임원 및 근로자대표(노조)

○ 일 정 : '05.10.26(수) 14:00~16:00

○ 기 타

- 본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적용 우선 추진
- 직업상담원에 대한 퇴직연금제 실시 검토 필요

□ 무료교육 실시(준비)

○ 목 적

- 퇴직연금제도 전반, 퇴직연금제도 설계(규약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지식의 부족을 해소 시켜주고,
- 특히, 각 금융기관별 장·단점을 안내, 각 사업장에 맞는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 상

-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 신규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자 및 근로자 대표

※ 근로시간단축 관련 위탁교육 참조

○ 지원 방법 및 시기

- 방 법 : 무료 위탁교육 실시
- 시 기 : 내년부터 지원(예산 사정상)

○ 교육기관 선정 : 중립적·전문적인 기관 선정

□ 컨설팅 비용 지원계획 수립

○ 필요성

- 중립적인 기관에서 사업장 실정에 맞는 퇴직연금의 형태 도입 및 설계 지원 필요

※ 실제로 금융기관이 컨설팅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되나, 당해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지원방법

- 사전에 자격을 갖춘 컨설팅사를 선정하고, 컨설팅 여부 확인을 거친 뒤 컨설팅사에 지원

○ 지원대상 : 300인 이하 사업장(예산 범위내에서)

○ 시 기 : 내년부터 지원

2. 고시 등 하위규정 제정

□ 「고시」 제정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적립금 수준(확정급여형)
 - 주요내용 : 소급적용한 기간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차등하여 분할 적립 가능
 - 고시완료 : 노동부 고시 제2005-29호('05.10.5)(세부내용 불임)
- 운용관리업무의 재수탁 가능 기관의 요건
 - 필요성 :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퇴직연금사업자는 ▲기록관리업무, ▲연금계리업무를 다시 외부의 기관에 위탁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탁하기 위한 일정 요건
 - ※ 운용관리업무 :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관련 정보 제공, 연금계리업무, 기록관리업무
 - 주요 고시내용 : 기록관리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자의 인적·물적요건
 - 고시 예정 : 11월 둘째 주(10일간의 행정예고 필요)

□ 훈령 제정 등

- 「퇴직연금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 실무위원회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둘 수 있음
 - 완료 예정 : 11월 말
- 퇴직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준비
 - 위원구성 : 노사대표 각 2인, 전문가 3인, 재경부·금감위·우리부 각 1인
 - 1차 회의 개최(추진) : 12월 초순

3. 업무편람/지침 작성·배포 및 교육

○ 목 적

-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수리, 퇴직연금 실시 사업장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퇴직연금제가 올바르게 실시·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 퇴직연금 규약의 심사요령
- 퇴직연금에 대한 홍보 요령 등

○ 교육방법 및 일시 등

- 교육방법 : 각 청·소별로 2인(과장·업무담당자)씩 모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별로 자체 전달교육
- 일 시 : '05.11.7~8일
- 장 소 : 무주리조트 콘도

Ⅲ. 기 타

1. 금감위 감독규정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 인적 요건 중 연금계리 전문인력에 보험계리사, 퇴직보험등 종사자 외에 금융상품개발업무에 종사한자도 포함시킴
 - 당초안이 특정 권역(보험)에만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제도 초기 퇴직연금사업자의 균등한 참여를 저해할 우려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확정급여형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장주식, 주식형 및 외국 간접투자증권 등	30%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및 외국 투자적격 채권 등	40%
상기 위험자산에 대한 전체 투자한도	삭제

<확정기여형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장주식, 주식형 및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	0%
외국 투자적격 채권, 외국 간접투자채권(주식 40% 이하)	30%
상기 위험자산에 대한 전체 투자한도	삭제

2.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마련 관련

□ 배경

-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 사용자가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성격상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며,
 - 특히,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저 적립금이 예상 퇴직급여액의 60%이므로 나머지 부분 등에 대한 지급보장이 문제됨
 - 즉, 사용자가 불충분하게 적립하고 도산한 경우를 대비한 지급보장장치가 필요

※ 해럴드경제(10/18 6면) “퇴직연금 안전장치 구멍” 관련 기사

- 참고로 퇴직연금이 사용자의 납부중단된 경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 퇴직금제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함

※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 조항이 적용되고,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됨

- 동 사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에서 민노당의 문제제기로 법 제21조에 정부의 책무로 규정되고,

- 이에 작년 1차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차 용역실시중임

※ 1차 용역 : 기존의 연구물 및 연구자가 없어 1차 용역은 외국의 사례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임(문헌조사에 의존)

□ 향후계획

- 지급보장장치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나, 사용자 부담 문제를 이유로 다소 늦추자는 의견도 있음

※ 지급보장장치는 재보험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적립한 적립금에 반비례해서 premium을 징수하여 운영됨

- 2차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지급보장장치에 대한 기본골격은 마련될 수 있으나,

- 입법(별도법 제정) 및 작동 시기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외국의 사례 참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3. 세제 개편 협의

□ 협의 경과

- 현재 도입된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필수적임
- 우리부는 '05.3.21 재정부에 세제개편을 요청, 이후 계속 협의를 진행, 일부 세부시행방법을 제외하고는 협의 완료됨(금년 정기 국회 개정)

□ 세제개편 내용

<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

○ 재정부(안)

- 확정기여형 근로자추가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되 개인연금 저축(한도 240만원)과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로 함

< 소득세법 개정 >

○ 재정부(안)

-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인상(600만원→900만원)/연금액에 따른 구간별 금액인상(40~50%)
- 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액 인하(50%→45%)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

○ 재정부(안)

- 현행 40% → 30%로 하고,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

<붙임>

노동부고시 제 2005-2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5일
노동부장관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고시

과거근로기간 연차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년도	-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년도	-	-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년도	-	-	-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년도	-	-	-	-	100분의 60

※ 상기 적립금의 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의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당연도말일까지 적립하여야 하는 수준임

※ 가입기간 전체(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에 대한 적립금 수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frac{[(\text{과거근로기간} \times \text{적립금 수준}) + (\text{퇴직연금 설정시점 이후의 가입기간} \times 60/100)] \times \text{급여수준}}{\text{가입기간 전체} \times \text{급여수준}}$$

- 주) 1. “급여수준”이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말함
2.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연도부터의 적립금 수준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